

방역수칙 준수 등 이동제한 명령

1. 고양시는 2020년 12월 8일 공고 제2020-2724호에 의거 관내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해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9조제1항에 근거하여 방역수칙 준수 등 이동제한을 명령합니다.

○ 처분기간 : 2020. 12. 8. ~ 2021. 2. 14.

○ 처분내용

대표자·종사자 방역수칙

-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참석금지
 - 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미사예배법회 등, 공부 모임, 노래 연습 모임, 기타 강습 등
- 가족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참석금지
- 근무시간 마스크 착용 의무
- 근무시간 외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 수칙 준수
- 집합제한시설 출입 자제
 - * 『집합제한시설』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카페(프랜차이즈형 커피, 음료전문점), 교습소, 학원, 독서실, 스터디카페, 실내체육시설, 개인 및 단체 강습 등,
- 종사자 겸임 근무 자제

2. 이는 최근 고양시에서 요양시설 내 종사자의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고양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.

3.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대표자 및 종사자는 고발 조치(300만원 이하 벌금) 됩니다. 또한 「코로나19」 감염 확산 시,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,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받게 됩니다.

2020. 12. 8.

고 양 시

